



판결수령일 20. 11. 17.
항소마감일 20. 12. 1.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나14998 건물명도(인도)
원고, 항소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 (삼성동)
공동대표이사 이창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한진
피고, 피항소인 김화숙
울산 남구 대암로 51, 302동 405호 (신정동, 신정현대홈타운4단지
아파트)
송달장소 울산 남구 삼산로 120 (달동)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9. 9. 10. 선고 2019가단106667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0. 15.
판 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백산주택건설로부터 6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

2020. 11. 17.



계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1의 다.항 중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상환이행판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데,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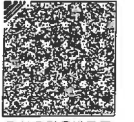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다231802, 231819 판결 참조), 피고가 2018. 12.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64,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주식회사 백산주택건설로부터 6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부당이득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차임에 상당한 부당이득금을 피고의 피담보채권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유치권자가 물건을 유치하는 것에서 나아가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에 대한 차임 상당액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그 실질적인 이익이 있었다는 점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유치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용·수익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금 공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우

정재우



판사

김정성

김정성



판사

노민식

노민식





별지

목 록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340-5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12길 15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공동주택 및 제1,2종근린생활시설

1층 414.06㎡

2층 내지 9층 202.1㎡

10층 193.0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340-5 대 104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02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3.88㎡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대지권 1883.4분의 83.88 끝.



정본입니다.

2020. 11. 16.

울산지방법원

법원사무관 조우형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울산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